07. 사회복지·종교(1/2)

중직무분야	구 직무분야에서의 이관안내 ('10.12.13개정이전)	개정'10.12.13. 고용노동부령 제11호	개정'11.11.23. 고용노동부령 제35호	개정'12.12.21. 고용노동부령 제71호	개정'13.03.23. 고용노동부령 제79호	개정'14.06.12. 고용노동부령 제101호	개정'15.01.21. 고용노동부령 제123호
071 사회복지·종교(2)	[(26)전문사무 분야에서 이관]	직업상담사1급	직업상담사1급	직업상담사1급	직업상담사1급	직업상담사1급	직업상담사1급
	[(26)전문사무 분야에서 이관]	직업상담사2급	직업상담사2급	직업상담사2급	직업상담사2급	직업상담사2급	직업상담사2급